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5.

발 의 자 : 장세만 · 김영호 · 김태근
김도문 · 김익수 · 권기만
박교상 · 박순이 · 석호진
임춘구 · 한정우 (11인)

1. 제 안 이 유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리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추진과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 시민자전거의 운영 및 자전거타기 시범지역·기관, 자전거 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16조)
-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7조 내지 제23조)

3. 참고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6. “자전거편의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자전거 횡단보도 턱 정비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자전거이용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안의 시민, 시범기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이나 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범지역·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건설도시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구미시교육청, 구미경찰서)
 3. 자전거 이용·시설관련 전문가, 녹색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법 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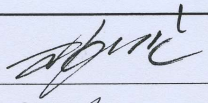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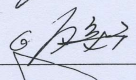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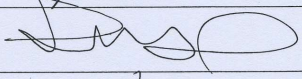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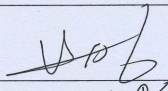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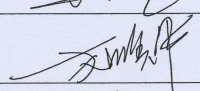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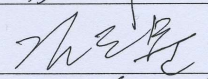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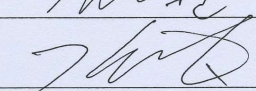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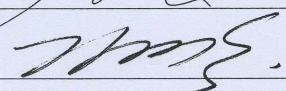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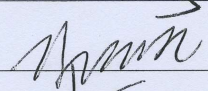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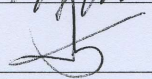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명

의원명	서명	날인
최사만		
임준우		
권기만		
박교상		
박수이		
김도훈		
김영호		
김익수		
김재진		
최호진		
한정우	